

대 법 원

제 3 부

판 결

사 건 2015재다1763 소유권말소등기

원고(재심원고) A

피고(재심피고) 1. B

2. C

3. D

4. 한국농촌공사

5. E

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9다46842 판결

판 결 선 고 2016. 3. 24.

주 문

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.

재심소송비용은 원고(재심원고)가 부담한다.

이 유

재심이유를 판단한다.

상고심의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고심의 소송절차 또는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 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. 그런데 원고(재심원 고)의 주장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포 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.

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, 재심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.

재판장	대법관	김 신
-----	-----	-----

주 심	대법관	박병대
-----	-----	-----

	대법관	박보영
--	-----	-----

	대법관	권순일
--	-----	-----